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 분양광고

청약 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6.04.03.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모두 **분양광고일(2026.09.03.)**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 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 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을 기준으로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매제한**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소유권이전등기 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까지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오피스텔은 타입별 900%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현황은 홈페이지(<http://www.해링턴스퀘어과천.com>)를 통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를 안내드립니다.

구분	청약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2026.09.08.(화) 09:00 ~ 17:30	2026.09.11.(금) 16:00 이후	2026.09.12.(토) 10:00 ~ 16:00
방법	인터넷 청약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 까지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계약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청약 Home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청약 Home 앱	해링턴 스퀘어 과천 오피스텔 건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번지)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오피스텔	○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Home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과천시 건축과-32965호(2025.12.09.)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경기도 과천시 2025-건축과-신축허가-34호(2025.07.02)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일반상업 5BL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11,350.00㎡
- 건축물 연면적 : 전체 77,482.4123㎡ 중 오피스텔 61,484.6954㎡
- 공급규모 : 지하5층~지상29층 2개동 오피스텔(지상2층~지상29층) 총 359실 중 20실
- 주차대수 : 총 468대(근린생활시설 제외)
- 건축물의 층별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4호”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해당하며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별도 분양 예정임

지하5층~지하2층	지하2층~지상2층	지상2층~지상29층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 해당사항 없음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이 확보되었으며 동법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산정한 내진능력은 진도 등급 I

▣ 준공예정일 : 2029년 09월 예정 (준공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준공일정은 추후 통보)

▣ 입주예정일 : 2029년 10월 예정 (향후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본 오피스텔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행정명령, 관련법령의 제정/개정, 주요 질병(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 재난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금액 및 민원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

- 본 사업은 시행사 겸 시행수탁자 (주)한국토지신탁과 시행위탁자 리즈인터내셔널(주)간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주)한국토지신탁에서 공급(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공급면적 및 공급규모

(단위: 실, m²)

타입	공급호실(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76A	14	76.9986	30.6335	107.6321	45.9115	153.5435	22.9261
84A	3	84.9809	33.3200	118.3009	50.6710	168.9719	25.3028
90A	2	90.9868	36.2616	127.2484	54.2521	181.5006	27.0910
90C	1	90.9834	35.8127	126.7961	54.2501	181.0462	27.0900

- 상기 면적은 건축 허가면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등 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실, 전기/기계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별 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면적(m²) × 0.3025 또는 면적(m²) ÷ 3.3058)

※ 실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금회 분양호실

타입	동	호실
76A	101	206, 506, 901, 1001, 1306
90A		803
90C		305
76A	102	801, 907, 1001, 1007, 1407, 1701, 1907, 2507, 2807
84A		206, 406, 506
90A		205

■ 공급금액

(단위:실,원)

타입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라인	층	공급 호실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일
									계약시(D)	D+30일 이내	2027.04.19.		2027.12.17.	2028.08.17.	2028.12.18.	2029.04.17.	
76A	101동 1·6호 102동 1·7호	2층	1	14	822,080,000	587,200,000	58,720,000	1,468,000,000	10,000,000	136,800,000	146,800,000	146,800,000	146,800,000	146,800,000	146,800,000	146,800,000	440,400,000
		3~5층	1		859,040,000	613,600,000	61,360,000	1,534,000,000	10,000,000	143,400,000	153,400,000	153,400,000	153,400,000	153,400,000	153,400,000	153,400,000	460,200,000
		6~10층	6		876,960,000	626,400,000	62,640,000	1,566,000,000	10,000,000	146,600,000	156,600,000	156,600,000	156,600,000	156,600,000	156,600,000	156,600,000	469,800,000
		11층~15층	2		895,440,000	639,600,000	63,960,000	1,599,000,000	10,000,000	14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159,900,000	479,700,000
		16층~20층	2		913,920,000	652,800,000	65,280,000	1,632,000,000	10,000,000	153,200,000	163,200,000	163,200,000	163,200,000	163,200,000	163,200,000	163,200,000	489,600,000
		21층~25층	1		931,840,000	665,600,000	66,560,000	1,664,000,000	10,000,000	156,400,000	166,400,000	166,400,000	166,400,000	166,400,000	166,400,000	166,400,000	499,200,000
		26층~28층	1		941,360,000	672,400,000	67,240,000	1,681,000,000	10,000,000	158,100,000	168,100,000	168,100,000	168,100,000	168,100,000	168,100,000	168,100,000	504,300,000
84A	102동 6호	2층	1	3	916,720,000	654,800,000	65,480,000	1,637,000,000	10,000,000	153,700,000	163,700,000	163,700,000	163,700,000	163,700,000	163,700,000	163,700,000	491,100,000
		3~5층	2		957,040,000	683,600,000	68,360,000	1,709,000,000	10,000,000	160,900,000	170,900,000	170,900,000	170,900,000	170,900,000	170,900,000	170,900,000	512,700,000
90A	101동 3·4호 102동 5호	2층	1	2	971,600,000	694,000,000	69,400,000	1,735,000,000	10,000,000	163,500,000	173,500,000	173,500,000	173,500,000	173,500,000	173,500,000	173,500,000	520,500,000
		6~10층	1		1,036,560,000	740,400,000	74,040,000	1,851,000,000	10,000,000	175,100,000	185,100,000	185,100,000	185,100,000	185,100,000	185,100,000	185,100,000	555,300,000
90C	101동 5호	3~5층	1	1	1,004,640,000	717,600,000	71,760,000	1,794,000,000	10,000,000	169,400,000	179,400,000	179,400,000	179,400,000	179,400,000	179,400,000	179,400,000	538,200,000

※ 오피스텔 타입별,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각 형(타입)별 상이하므로, 청약신청 시[공급금액 및 납부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 및 계약에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공통사항

- 본 공급금액은 타입별 면적, 층, 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었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니 청약 신청 시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급금액에는 인지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공급금액에는 별도 옵션(유상 옵션)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은 수분양자가 선택하는 사항으로 추후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을 진행합니다.
- 상기 면적 표시방법은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기준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면적이 산정됩니다.
- 동일 전용면적을 가진 단위실 타입 간에도 주동구성에 따라 호실외벽 두께는 다를 수 있으며, 전체호실 벽체공용면적의 합계를 각 호실별 전용면적비로 균등 배분하였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 건축물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타공용면적(기계실, 전기실, 방재실 등)은 각 시설별 면적(전용면적, 층별 공용면적, 벽체공용면적 등)의 합계 비율에 따라 면적 배분하였습니다.
- 청약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직접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지분은 분양 당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각 용도별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합계 비율로 균등 배분한 것을 각 호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내에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단,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실에 할애 하였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호실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상기 호실별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절사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에 납부하며, 납부방법은 아래 납부일정에 따라 1차, 2차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2차 계약금 납부일자 경과 후 납부 시 연체료가 적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 공정이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 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받을 수 있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은행영업일 익일 기준으로 합니다.
-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이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선납금액 중 약정별 납부기일이 지난 경우는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일 이후의 계약호실의 관리는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합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 주변개발, 조광권, 송전탑,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 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경기도 과천시와 정부정책 및 해당사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시 별도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임대사업자)을 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관계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 이후 관련법령이 변경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분양광고일(2026.09.03.)**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 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사업자는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무작위로 추첨 결정합니다.
- 청약신청은 1인당 1실(건)을 기준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타입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청약일시	2026.09.08.(화)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마감시간까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청약Home 앱)
당첨자 발표	2026.09.11.(금) 16:00 이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청약Home 앱)
계약일시	2026.09.12.(토) 10:00 ~ 16:00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번지, 해링턴 스퀘어 과천 견본주택

※ 스마트폰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가능하며, 청약 전에 청약통장 취급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또는 카카오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번지**

■ 청약신청 방법

구분	내용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이체한도 확인)
이용방법 및 절차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① 접속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청약신청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오피스텔형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등(연락처, 주소)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 조회 ※ 스마트폰(청약홈 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기준은 17:30 으로 청약신청 중 17:30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 신청금	내용
모든 타입 공통	₩3,000,000원 (금삼백만원정)	- 청약 신청 시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1통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1통]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감증명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법인 신청 시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부(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1부(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1부)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 법인 명의) ※ 대리신청 시 일반공급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참고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청약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 1항에 의거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분양광고일(2026.09.0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 2026.09.11.(금) 16:00 이후
- 발표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스마트폰 청약홈 앱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신청 타입별 900%를 무작위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6년 09월 11일(금요일)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속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자 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동·호수는 무작위로 추첨 결정함
기타사항	• 타입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환불대상 : 청약신청자 전원(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

구분	환불방법 및 장소
환불대상	-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은행(창구) 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 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소	계약금 납부(계약체결 시)
2026.09.12.(토)	10:00 ~ 16:00	해링턴 스퀘어 과천 건본주택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번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 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당첨자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납부계좌

※ 분양자들께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수협은행	1130-0064-0345	(주)한국토지신탁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3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0301홍길동]
중도금 / 잔금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 또는 층수의 증감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며, 그 내용을 분양받는 자 전원에게 알립니다.
- 당점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수의 분양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 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금 10%은 위약금으로 시행사로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후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점자는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 계약 호실에 대해 호실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제9-42조,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가 공급금액은 인지세,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그외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이에 대한 미납부 및 기타행정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기준	비고
공통 기본서류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견본주택 내 현금 수납 불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본인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오피스텔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분할 납부 ※ 인지세 납부금액은 아래 '인지세 납부 안내' 참고 ※ 수입인지 구입처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본인 계약 시	필수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본인발급 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불가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 제출 시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발급
법인 계약 시	대표이사 신분증 및 주민등록표등본		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
대리인 계약 시 제출서류 (본인 이외는 모두 제3자)	위임장		계약자	- 견본주택 비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본인발급 분)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분양광고일(2026.09.0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청약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오피스텔과 관련된 모든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 공급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수분양자는 공급금액과 별도로 인지세의 50%를 공급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는 시행위탁자가 선 대납하여, 공급계약 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할 예정입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시 최종 매수자까지)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기재 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중도금대출 안내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과천시는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개인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비용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인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포함),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대출금액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은 분양금액의 60%인 중도금 한도 내에서 중도금 대출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대출이자자는 사업주체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개시일 최초일 전일까지는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 총액의 50%는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무이자 조건이며, 나머지 50%는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으로 계약자가 부담하여 입주 또는 잔금납부 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자는 “을”이 직접 중도금 대출은행에 납부 및 부담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는 중도금대출보증 요건 강화로 양 공사(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건수를 세대당 1건으로 제한하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용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대출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 신청 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및 일반임대사업자등록증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60% 내에서 알선하며,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출 불가로 인해 본인이 직접 지정된 계좌에 현금납부 하는 경우, 또는 입주지정기간 전에 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대출이자 발생하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는 그 금액을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 관련 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할 경우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LTV, DTI 적용으로 개인에 따라 차등)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계약자는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 및 법인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지정된 계좌에 현금납부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자를 사업주체가 대납할 경우, 그 대납기간은 최초 대출이자 발생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로 하며, 계약자는 입주를 하기 위해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 잔금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대출이자자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권 전매, 상속, 증여 등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될 당시 중간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당사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를 추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실제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대출이자, 보증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설령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입금자명이 ‘동호수’ 또는 ‘계약자성명’이 아니라 확인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중도금대출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지연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대출은행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간 사전 협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일정 시점 이후 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 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금 미납,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한 모든 분양수입금의 수납은 (주)한국토지신탁 명의의 지정된 분양수입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는 본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자(매도인)은 본 공급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IV

선택품목 안내

▣ 별도계약 - 추가선택 품목

※ 공통 유의사항

-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는 별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과 관련하여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사일정 및 자재수급 등의 사유로 계약 이후에는 추가선택 옵션 품목의 계약 및 변경 취소가 불가합니다.
- 옵션 추가 선택시 해당 부위의 기본 제공 품목(조명, 주방벽 타일, 냉장고장 등)은 설치 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오피스텔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선택 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오피스텔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발생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후 옵션 추가선택 시 기존 실거래 신고에 대하여 수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1) 가전제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위치	품목	76A	84A	90A	90C
주방	비스포크 냉장고 패키지 + 상부장	5,368,000	6,578,000	8,613,000	6,028,000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990,000	990,000	990,000	990,000
	렌지후드 독립형 (힘펠)	517,000	517,000	517,000	517,000
FCU	FCU 무풍	2,013,000	2,013,000	2,013,000	2,013,000
욕실1·2	욕실복합환풍기 (힘펠)	1,166,000	1,166,000	1,166,000	1,166,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위치	품목	76A	84A	90A	90C
현관	3연동 슬라이딩 수동 중문	1,529,000	1,529,000	1,595,000	1,529,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위치	품목	76A	84A	90A	90C
바닥 마감재	바닥 : 광폭 강마루	583,000	616,000	682,000	682,000
거실	아트월 : 세라믹타일	5,115,000	2,816,000	4,081,000	3,718,000
조명특화	특화조명기구 : 거실간접등 + 침실엣지등 / 디밍스위치 추가	4,389,000	6,391,000	5,390,000	5,742,000
거실 발코니	거실 발코니 수납장	737,000	737,000	737,000	737,000
복도	복도 수납장	1,287,000	1,287,000	-	-
드레스룸	벽판넬형 시스템선반, 슬라이딩도어, 파우더장	3,861,000	4,213,000	6,105,000	6,303,000
침실 1	교차형 불박이장 (여닫이형)	-	-	1,903,000	1,903,000
다용도실	다용도실 수납장	693,000	737,000	693,000	693,000
주방	수납장 특화 : 유리상부장 및 장식장 / 벽 : 세라믹타일 상판 : 세라믹타일 / 싱크수전 : 외산 / 싱크볼 : 고급형 / 매립형 콘센트 / 고급형 미드웨이선반	5,610,000	7,348,000	9,746,000	10,120,000
자녀방 가구 패키지	자녀방 책상 및 책장	3,333,000	3,333,000	3,333,000	3,333,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위치	품목	76A	84A	90A	90C
욕실	도기/수전 : 외산 샤워부스 색상특화욕실 액세서리류 : 외산	5,258,000	5,258,000	5,258,000	5,258,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납부금액(비율)	납부시기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계약 시	1005-901-798824	우리은행	효성중공업(주)
잔금	공급금액의 90%	입주지정일			

- 13 -

- 지정된 계약금, 잔금 약정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피스텔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잔금(9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별도 공급계약서에 준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계좌 및 계약 체결 이후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옵션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 추후 옵션 추가선택 시 기존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하여 수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 오피스텔 분양 공급계약서 체결과 별도로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을 입주 시까지 미납 시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V

기타 계약자 안내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예정월 : 2029년 09월 예정**
- **입주예정월 : 2029년 10월 예정**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행정명령, 관련법령의 제정/개정, 주요 질병(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 재난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 보상금액 및 민원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0호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통지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점검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경기도 과천시)내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사용 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
-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분양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설계의 변경)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설계의 변경)를 준수합니다.

- ① 분양 이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경은 분양받은 자의 서면 동의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 ② 설계변경 이전에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 날인된 관련 도서 및 설명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는 내용증명 우편 또는 직접 교부 방식으로 분양받은 자에게 제공합니다.
- ③ 동 조 제3항에 따라 설계변경을 아래와 같은 절차로 통보합니다.
 - 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분양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 날인된 관련 도서 및 설명서를 포함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일반

- 공급신청서의 [타입]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분양광고상[타입별(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승인된 건축허가 도면과 착공신고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당해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택지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본 오피스텔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지구내 속한 구역에 건축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견본주택에는 84m²A 및 90m²A 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호실 CG 및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타입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 시 외관 디자인 및 색상, 유리색상, 조경 패턴 및 식재, 시설물 디자인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 설계 시 품질 개선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 내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및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별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 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견본주택 및 각종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본 공사 시에는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며,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문주, 시설물, DA(설비 환기구), 부대시설, 실외기실, 자전거보관대, 포장패턴 및 소재, 주변 환경, 인접대지와와의 레벨차에 따른 단차 처리 방법 및 마감재, 전기 인입점(한전 PAD, 인입전주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광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점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오피스텔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행정명령, 관련법령의 제정/개정, 주요 질병(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국가 재난사태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타입별 마감 자재 내용은 타입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타입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준공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타입,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부지 고저차, 층 표시, 외관(용도별 출입구, 저층부 석재, 창호 유리/프레임의 색상, 난간, 옥탑, 지붕 등)의 형태와 색채,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외부 난간 형태, 색상 및 높이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입내부 및 본 건물의 내·외부의 일부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 된 단지모형 및 건립타입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제연휀룸 및 지하주차장 휀룸용 DA(설비 환기구), 주변현황(조경 식재, 조경시설, 포장 단지주변 레벨현황 등)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 된 창호, 현관 도어 및 그릴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현된 점점구 위치 및 크기 수량은 본 공사 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 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동파방지열선, 조경용수, 우수저류조, 공용시설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호실 내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도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미설치, 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어있지 않음.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본 건물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으며, 설계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광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추후 설치될 예정으로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등에 표시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철도,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자 및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위탁자, 시행수탁자,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계약 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성과도 및 관련 심의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내 도로선형 및 기울기,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출입구 도로 확폭 구간)의 형태, 공법,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수반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 및 내부에 단차가 있고, 접근 위치에 따라 계단 및 경사로, 난간 턱 등이 설치되어 통행 및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현장 확인 및 견본주택의 모형, 인·허가 도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호실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급가격은 각 호실의 타입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동일 타입의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광고 등에 제시된 조감도, 호실 평면도 등 설계관련 도서 및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건축(변경)허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합니다.
- 본 단지의 명칭, 층 표시, 주동외관(출입구 및 저층부 석재, 창호 유리/프레임, 난간, 옥탑, 지붕 등)의 형태와 색채,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평입면계획, 외부 난간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등은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진행시 현장여건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호실이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지는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대지에 다른 건물이 건축될 예정이며,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일조, 환기, 조망권, 소음 등이 심각할 수 있으니, 해당 호실 및 인접 건물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설계도서와 견본주택 단지모형 상 외벽 색채, 옥상 조형물 등은 안전사고 방지, 성능개선,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합니다.
- 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각 호실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용도별 주차대수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어 주차대수 추가, 용도별 주차대수 변경, 차단기 추가, 택배차량의 지하주차장 진입 등 인허가 사항 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위치는 대로 등 도로소음에 직접 노출 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로 인해 소음, 분진,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부지, 현장여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로 인해 향후 입주 후에도 먼지,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부지 외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개발주체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시공자의 시공 범위가 아님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오피스텔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근린생활시설 이용자와 주차장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여야 하고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 시설 간에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로비 등 공용공간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제공사구 및 마감재 등은 실 시공 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 제연휀룸, DA(설비 환기구), 에스컬레이터, 조경 식재 및 시설물, 근린생활시설 이용자 등에 의해 일부 호실은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단지 모형 및 인허가 도면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구조 등의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 건립된 타입의 경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에 설치 타입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기 통신 분전반, 대기전력차단장치, 월패드, 디지털도어록 등의 제품사양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수전(싱크수전,세면대수전,욕조수전,샤워수전,세탁수전), 도기(세면대,양변기), 약세사리(수건걸이,휴지걸이), 환기디퓨저, 환기유니트, 바닥배수구 위치는 본 공사 시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시 천장에 시공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건축물 용도이며, 본 공사 시 관련법규 및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맞춰 시공됩니다.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마감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미 건립된 타입의 마감재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사 타입과 상이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욕실 바닥은 물 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지하출입구, 옥외시설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평형 및 타입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 색채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 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포장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 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 및 인쇄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시행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전에 이를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여야 합니다.
- 시공자가 안내하는 호실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각 주동 코어(Core,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위치) 형태에 따라 일부 호실은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당 오피스텔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약 6개월간 공사용 운행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후 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하에 있으며, 시공자에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 공용공간,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층 및 저층 호실은 경관 조명 및 상가 조명, 각종 사인물에 의한 빛 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군 배정 등이 지연되거나 불가 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현장AS센터(가칭)을 주차장,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에 대한 일체비용 (임대료, 해체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현된 점검구 위치 및 크기, 수량은 본 공사용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건축물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당점차 및 계약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부 정책으로 변경된 각종 세금 관련 문제는 계약 시 세금 관련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그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자는 이와 무관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 부지 일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공고지역(지역냉난방 의무사용 지역)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 중 지하2층은 상가 이용객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으로 운영되며, 주차관제 시스템을 통해 입주민 및 외부인의 출입은 사용시간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지하2층 주차구역은 상업시설 전용 계획에 따른 것으로, 입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입주자협의회 등의 결의를 통해 용도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비상차도, 보도,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조경시설,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 주출입구, 근린생활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오피스텔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시설 등을 본 오피스텔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단지 배치계획에 따라 건물 상호 간섭, 지형물 및 기타 구조물로 인한 조망,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 · 외 마감재, 조경, 기타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승인 전·후 최종 인·허가 도서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상담 및 도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오트메이션)의 기능이 본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 및 시공상의 여건 등으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계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대지 주위 도로폭, 단지와의 단차, 단지내 도로선형 및 기울기,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차에 따른 경계표현 및 진입방식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수반 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층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당 사업지로 진입 시, 계단 및 경사로를 통해 진입 가능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는 최종 현장 여건에 따라 계단 단수 및 경사로 길이 조정 등의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보차도와 대지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모형/CG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옹벽의 높이, 재질 등은 분양 시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교통망 및 도로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는 지하5층을 제외한 전층 운행됩니다. - 지하5층은 비상용승강기만 운행됩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진입하는 부분은 출입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보안구역으로 설정됩니다. - 화재 시는 출입보안시스템이 해정되어 계단을 통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본 공사 진행 간 엘리베이터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동파방지열선, 조경용수, 우수저류조, 공용시설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옥외보안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세대 내에는 배연창이 설치되며 위치는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인·허가 관계기간의 협의에 따라 크기, 색상,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배연창이 설치된 창은 수동 개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외보안등 및 지하, 지상층 CCTV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기능과 감시 범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TV안테나, 무선통신중계기, 이동통신 안테나, 태양광 발전 패널 등은 옥상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 및 규모, 형태 등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옥상 및 건축물 높이에 따라 피뢰 설비가 설치되오니 인지 바랍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 내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호실에는 옥외보안등, 기타 보안시설 등에 의한 빛 공해 및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건물입면 및 옥상에 항공장애등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공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현관중문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현관에 소방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바닥드레인, 선풍통, 수전류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증, 속도, 탑승위치 등)은 준공도서에 준합니다.

- 지하주차장 중 오피스텔입주자는 지하3층4층을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호실별로 주차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으며,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 등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서는 차량의 문이 기둥 및 벽 등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 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보주택에 비치된 모형, 각종 CG, 각종 카탈로그 등의 배포광고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및 조감도와 투시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색상 및 세부사항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의 조경공간, 식재수종, 보행동선 선형, 조정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관 구성상 일부 호실의 경우 외부 벽체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위치, 규격, 디자인, 재질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벽 디자인(요철계획, 석재마감 등)에 의해 일부호실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공용 복도에는 배연창이 설치되며 인·허가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라 크기, 색상,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배연창이 설치된 창은 수동 개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물(램프출입구, 주동출입구, 자전거보관소, DA, 제연철크, 소화전 등)의 디자인, 색상, 마감재, 위치 등에 대해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물외벽 사인물 설치는 실 시공 시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됩니다.
- 투시도, 조감도, 배치도에 표현된 본 단지의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호실별로 차이가 있으며, 창호 및 난간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개폐방향, 제조사 등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시도, 조감도, 배치도에 표현된 단지 주변의 계획레벨(도로, 광장, 근린생활시설 등) 및 단지에 면한 인접 대지레벨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단지 경계부의 옹벽/석축 및 계단/램프의 종류, 재질, 사양, 디자인, 색상, 노출범위, 높이, 길이, 형태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상 자전거 보관소 계획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위치, 규모 및 개소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너비, 차선,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교통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접해 있거나, 단지 주변에 있는 시설(도로 등) 및 지형은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에 의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접해있는 인접 건물에 의해 일부호실에서는 조망 및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기관에 주변 현황 및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 식재(소나무 등) 계획으로 인한 일부호실의 조망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도로 및 근린생활시설 밀집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도로(도시계획도로, 비상차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등에 인접한 저층부 호실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의 외벽의 마감재, 색채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출입구의 경우 접근성에 있어 다른 출입구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장치 및 무인택배 보관함, 쓰레기보관소 등은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도서 기준으로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로 시공 예정이나,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이러한 전기차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공용부(계단실, 복도 및 엘리베이터홀 등) 창호 사이즈는 실 시공 시 생활환경 개선 및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1층, 그 외층의 기준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일부 외부공간의 경우 지상으로 노출되는 지하층 DA(설비 환기구) 및 휴게공간, 에스컬레이터 등에 의해 일부 사용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각 시설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한전패드 위치 등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통신공급을 위하여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중 공개공지를 통한 단지 출입구 진입부위는 입주민 편의를 위해 바닥을 포장한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없습니다.
- 단지 내에 계획된 공개공지는 외부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본 단지에서 임의로 일반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지상 및 지하의 출입구 전면에 구조계산에 따른 불가피한 구조기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에서 지하, 1층 진출입구로의 접근 동선은 주변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코어(Core,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위치) 형태에 따라 일부 호실은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외부 바닥 포장 및 외부공간, 식재계획, 시설물계획, 레벨, 경사로 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내·외부 레벨차이에 의한 옹벽 및 법면의 경우 형태 및 구간의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홀, 복도폭, 계단실 형태 및 치수는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옥탑 및 지상 일부구간에는 무선통신 안테나 및 이동통신 기간사업자 중계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 능력은 내진 I등급입니다.
- 공개공지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호실은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지하 2층, 재활용품분리수거실 지상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설계변경으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일부 실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의 신축, 단지 내 인접동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층간, 호실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소,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개공지에 설치되는 시설물 및 식재계획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설치 위치와 개소, 형태 등은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 및 전면도로와 인접한 실은 소음, 분진 등 생활권 및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2층 주차장은 택배차 진입을 고려하여 진입구부터 조업주차까지 진입 높이 및 차로 유효높이가 2.7m이상으로, 주차구획 유효높이는 2.1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2층~지하4층 지하주차장의 차로 유효높이는 2.3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어 관리주체의 관리방침에 따라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할 수 있으며,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지하2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동별 시설 이용 접근성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동에서는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옥외시설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건물 입면의 재료 마감 및 디자인은 건축허가도면에 기준하여 시공될 예정으로 입주자 민원에 의해 임의로 재료마감 및 디자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설계 변경에 의한 단지 내 레벨, 진출입구 위치, 주동 및 시설물의 배치 등 계획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익스테리어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증(에너지절약계획서 등)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참고용 예시자료이며, 실적용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나 기술로 변경(설계변경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향과 층에 따른 일조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단지 내 인동거리에 따른 일조량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없으니, 해당 동의 위치 및 향을 고려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CCTV와 주차유도시스템을 위한 주차장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랍니다.
- 본 건물의 측면 및 전, 후면에는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인접호실은 소음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화재 시 소방차의 비상진입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식재, 차폐시설, 포장 계획 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으나, 법적으로 확장은 불가함을 확인 바랍니다.
- 오피스텔 일부 층은 화재 시 필요한 배연창이 설치되며, 배연창은 수동개폐가 가능하나, 손잡이가 없어 개폐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었고, 호실 내 실간벽은 일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일반 벽식구조 아파트와 비교하여 소음 및 충격음 전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층 상부 일부에 TV 공청 및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정확한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부지는 지역냉난방 설치 의무지역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역 열원을 이용한 중앙공급식 냉·난방 및 온수가 공급되며, 입주자는 개별적인 냉난방설비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실외기실은 구획되어있지 아니한바 이와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관리주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냉·난방 모두 지역냉난방 공급지역이며, 지역냉난방이 공급됩니다.
- 본 건물 옥상에는 건물전체에서 사용하는 자연환, 송풍기 및 탈취장비 등의 장비가 설치되어 옥상 정원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에는 설비 배관/덕트를 위한 샤프트가 설치되어 있어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공용부에는 냉난방설비 및 환기 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임의로 설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본 건물 전용면적 내 기계설비로 인하여 전용면적 내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 공용부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맨홀이 단지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역난방수 공급을 위하여 지역난방 공급업체와의 협의 후 결정된 위치에서 단지 내 연결되며 공급 위치 및 제반사항은 지역난방 열원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근린생활시설용)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또는 맨홀이)가 단지 북측 근린생활시설 인근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결정되며, 향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을 수 있음.(단, 유관부서 협의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 옥상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수조 및 펌프실이 위치하며, 지하층에 제연환이 설치되어 기기 작동 시 인접한 호실은 소음.진동.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 측면 및 전,후면에는 지하시설물의 배기구가 형성되며 이로 인해 인접호실은 소음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상의 모든 DA(주차장 및 발전기실, 기계실 환기용, 제연용)는 소음, 매연,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으므로 인접동 입주민께서는 모형과 카다로그 상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외기에 직접노출, 간접노출되는 배관 및 옥상, 지하 일부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건물 전체 지붕 우수 처리를 위해 공용복도 및 전용공간의 천장 내부로 우수관이 관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냄새.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지하에 설치되는 저수조, 우수 처리시설 등의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이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기계, 소방, 전기 시스템 및 기타배관 등 일부 장비가 근린생활시설과 공용으로 사용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 덕트 등이 노출될 수 있고, 배관, 덕트에서 소음, 진동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하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냄새 등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다용도실(세탁실) 배수구는 옵션선택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발코니 구간은 물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되어, 수전, 배수구 등이 위치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에는 에어컨 추가설치가 고려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팬코일 유닛은 작동 시 전동밸브가 ON/OFF함에 따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수전류(화장실,다용도실), 도기류(세면대,양변기), 약세사리(휴지걸이, 수건걸이)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조정될 수 있으니, 이를 인지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에서 백연(수증기)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가 다수 설치되어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하부PIT층에는 메인 오수,배수,우수,소방 배관등이 설치되고, 1층 천장속에 급수,급탕,냉방,난방 배관등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에 습식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화재 시 또는 관리 부주의로 소화수가 방사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2층 쓰레기수거 차량이 들어올 수 있으며, 관련 동선을 반영하여 배관, 덕트 등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정기적으로 영구배수 펌프가 작동되어 펌프 및 배관 주변에 소음,진동 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PIT, PD내에는 배관이 위치하여 배관내에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복도천장속에 각종 배관등이 위치하여 유속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3층 주차장 101동(남서측) 근처에 지하4층 기계실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반입구(가로8m,세로4m이상)가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계획은 소방심의 및 소방기관의 현장실사 등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소방차의 진입과 회전, 정차 등을 위한 조경배치와 동선의 형태, 규모, 재질 및 기타계획이 입주자의 동의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각종 환기구(D.A 등)의 면적 및 위치가 시공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이 추가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쓰레기수거장 등의 배기설비가 본 건물 옥상에 설치될 수 있어,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수, 오수 배관의 실시공 위치는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관련법령에 의해서 건물의 용도별 제연설비, 방화벽, 방화셔터 및 출입문이 전용 또는 공용부분에 설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소방구역에 따른 방화벽 등 제반 설비 설치 시 임의 조정 및 불법철거를 할 수 없으며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 시 소방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 소화전 위치는 법적 사항에 맞춰 그 위치가 계획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에 따른 간섭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2층에는 쓰레기수거장 계획되어 있으며, 환기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실은 이로 인한 소음.진동.냄새.조망권.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 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고, 호실 현관문의 열림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 시 가구 및 가전의 열림 방향 및 설비, 전기 품목의 설치와 관련하여 일부 유상옵션 가구의 크기가 사용성과 설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벽(PD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사이버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수입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주체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본 공사 및 하자 보수 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나 견본주택에는 마감재 이외에 옵션품목 및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등은 실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평면도,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vein: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결(vein:베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씽크대 내부의 가구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호실별 각 부분의 창호 크기 및 열림방향 난간 높이 등은 호실 타입별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크기와 상이 할 수 있으며 실 시공시 열림방향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타입 내 욕실 세면기, 양변기, 주방 개수대, 쿡탑 위치는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2~19층) 세대는 소방관 진입창 표시가 부착되며 진입 시 유리를 파쇄하고, 위치는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상세설계 진행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관 진입 표시는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빛반사, 야광 등의 재질로 제작되며, 크기, 부착 위치, 재질 등은 관계법령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 호실별 내부 단차 부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외부창호의 사양, 프레임 두께 및 색상, 난간 재질 및 형태, 손잡이, 개폐방향 등은 본 시공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내포압 구조 검토 후 필요 시 유리사양은 동등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불박이장, 신발장의 하부, 욕실 중 일부(샤워부스 하부, 드레인 주변, 양변기 주변, 세면기하부 등)에는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호실 내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침실 불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실별 복도에 면한 벽체 하부(복도측)에는 급수 및 급탕 계량기와 파이프덕트 내부에 냉방,난방 계량기가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타일은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가구 간섭부분은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 들 수 있으며, 급기구 설치 위치에는 커튼박스 깊이가 알 게 조정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호실 현관문 및 타입 철재도어의 도장, 색상, 디자인 및 세부 디테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 현관문의 경우 승강기홀의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 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마감재 및 창호류(방화문 포함)등은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에서 선임한 감리”가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의 내화 시험 등에 통과한 제품으로 인정하여 설치한 경우, 준공 후 이에 대한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콘센트 및 스위치), 호실분전반, 호실단자함, 월패드의 위치는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설치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관리가 용이한 노출된 장소에 설치되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방/거실/복도 바닥, 욕실 벽/바닥, 복도/거실 아트월 등의 타일 나누기는 실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바닥, 아트월 등의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아트월 타일 모서리 부위에 재료분리대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 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가 설치하는 가전기기로 인해 공간의 제약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당사에게 없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부 설치되는 불박이장의 형태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형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평면 타입에 따라 길이 및 타입이 변경 제공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및 모형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화성능시험이 요구되는 공종의 경우, 성능인증 및 인증표시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입주 후 임의해체 및 부속물(디지털도어록/말발굽 등)의 임의설치/교체에 따른 성능시험 결과는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같은 타입 일지라도 타입별 위치에 따라 측벽 및 호실간벽의 두께, 구성, 조망, 일조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호실별 통신 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기간사업자에게 제공 요청하여야 합니다.
-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와 타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및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중 하이오티(Hi-oT) 서비스와 제휴된 IoT 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호실 내부 무선 Wi-Fi용 무선 AP는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하이오티(H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단위호실 설비, 전기,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일부 타입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호실 별, 타입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전위치, 바닥레벨, 단차부위, 천장마감, 호실 환기설비, 수전, 바닥배수구, 전기스위치 콘센트 등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욕실 천장, 주방천장 또는 주방가구 내부 등에 설치됩니다.
- 인조대리석 및 석재 / 타일 자재의 경우 제조과정에 따라 무늬 및 색상이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사항이 아닙니다.
- 입주자의 실내 생활 환경 (호실 환기 빈도 등)에 따라 창호 및 마감재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사항이 아닙니다.
- 본 광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공급계약서 분실 사유로 공급계약서 재발행 요청 시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및 재발행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천장에 냉방전용으로 설치되는 팬코일유닛 유지관리를 위하여 팬코일유닛 주변에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크기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이며, 본 시공 시 냉방전용기기(천장형 팬코일유닛)가 실 부하에 맞게 적용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팬코일 유닛 컨트롤러는 냉방전용 제품이며,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팬코일유닛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깊이, 설치부위 천장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팬코일유닛은 등기구 설치위치 변경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팬코일유닛 리모컨은 실내기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오피스텔 내 냉방기기(팬코일유닛)의 성능은 설치되는 실별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난방은 욕조, 샤워부스, 옵션 다용도실, 기본형 다용도실, 세탁실 등에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양변기 물탱크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세대내 온도차이로 인한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내에는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으며, 기계실의 열교환기를 통해 난방, 급탕이 공급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용도실의 세탁기, 건조기 사용시 습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환기시스템 작동을 통해 습도 조절을 해야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의 냉방, 난방 사용요금은 각 실별 개별 계량기(냉방용, 난방용)에 의하여 부과될 예정입니다.
- 침실이 인접호실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 화장실 천장내 설치되는 급수급탕분배기는 상부호실용 분배기로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내 오배수배관은 층하배관으로 설치 될 예정이며(펜트층 일부 층상배관설치 예정), 배관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해당 배관은 상부호실용으로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설치되는 위생기구류(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의 설치 위치, 사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의 렌지 후드 환기시설과 욕실 배기는 직배기로 계획되어 있어 인근세대에서 냄새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본 시공 시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환기설비인 공기순환기 장비가 피난구실에 설치 될 예정(마감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이며, 장비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 시공 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환기 설비는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호실간 소음 발생량이 차이 날 수 있음),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환기 설비의 필터는 헤파필터로 연 1회~2회 교체를 권장하며 사용정도에 따라 주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교체 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세대내부는 사용자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에는 가스 배관이 설치 되지 않으므로 가스쿡탑 등의 가스사용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전기식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덕트 커버 사이즈, 높이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내 현관 및 주방가구(주방에 설치되는 가구) 하부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홀 및 공용부(복도)에는 별도의 냉난방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입주자 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단지 전체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벽에는 실내 환기장치용 환기캡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라믹 대형 아트월 타일은 자재 양중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단위설 디자인에 맞춰 컷팅 시공되며, 이에 따라 타일의 나누기선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 상부 몰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은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특히 거실 우물천장의 몰딩 디자인 및 디테일(규격 포함)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사전고지 및 동의절차 없이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우물천정 내 간접조명 설치에 따른 음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설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 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동빨래건조대는 평면 구조에 따라 일부 세대는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입주자의 편의성과 사용성 개선을 위해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 가구의 색상, 규격, 형태 및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시공여건 및 자재 수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내부 구성은 본 공사 시 사용성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 등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점검구 설치 및 안정기 매립 등을 위해 일부 공간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온수분배기는 싱크볼 하부에 노출 설치되며, 해당 공간의 수납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수분배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싱크장 내부에 설치되는 가림판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및 옵션 선택 포함 시스템가구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디자인 및 레이아웃은 시공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실별 코킹 시공 부위는 시공 여건 및 마감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 내 기본제공으로 적용되는 빌트인 가전은 제품의 단종, 변경, 성능 개선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제품 공급이 불가 시 등급, 동가 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시공 시 호실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은 본 공사시 제조사, 규격 하드웨어 사양, 컬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의 개폐 방향은 호실의 단차 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지는 과천정보타운역과 연결되는 지하공공보도가 신설될 예정으로 사업지 건물과 연결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 될 예정입니다.
- 과천정보타운역과 연결되는 지하공공보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결정할 사항으로 견본주택에 표현한 지하2층 지하공공보도 연결 표현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확정시 설계변경을 진행할 예정으로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하공공보도 연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결정에 따라 연결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지하2층 위치한 오피스텔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 편의성 증대를 위해 면적 및 기능을 추가시킬 예정으로 이로 인해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은 동일한 주차장 진입로를 이용하되, 지하2층에서 주차구획은 주차차단기로 주차구획이 분리되어 있으며 그 차단기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경관계획에 따른 야간경관 조명으로 인해 빛 공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세탁실 공간은 타입별 다를 수 있으며 세탁기 사용 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 세탁선반은 평면 구조에 따라 일부 세대는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인근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일부 세대는 거주환경 제약으로 일조침해, 시야차단,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동, 호수 위치 확인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1층 일부공간은 과천시 기부채납 시설이 들어 올수 있어 공용시설(복도, 화장실, 각종 행사로 인한 임시점유 등)을 공유 할수 있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내부높이)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면적 및 형태, 구성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양 시 제공된 정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상 2층 및 최상층은 세대 내 방법을 위하여 동체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 됩니다. - 세대 내 가구 일체형 조명기구와 같은 복합기구 적용 시, 해당 기구는 일괄소등 스위치의 동작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벽체 및 바닥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난방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전기, 급수, 온수, 냉방, 난방계량기는 원격 검침 방식이며, 세대 월패드로 표시된 검침량은 실제 검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 및 홍보물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오직 본 분양광고, 분양계약서 및 사업주체가 직접 제작·배포한 공식 카탈로그·출력물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만을 계약의 근거로 인정합니다. 영업직원(분양대행사 포함)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구두 설명, 비공식 자료, 허위·과장 광고 등은 본 사업주체의 공식 의사로 간주되지 않으며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비공식 정보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해제·해지, 정정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일절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반드시 건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의 분양상담 및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방식이 아닌, 고객의 자발적 방문과 요청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사업주체 및 분양대행사는 일체의 강압·기망·부당권유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모델하우스에서 제공되는 상담은 동 법률상의 청약철회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반드시 건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질, 품귀 등으로 시공 중 동질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간지 등) 및 컴퓨터 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건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정압실 위치 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타일류는 본공사시 품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타일 나누기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공용홀 SIGN 및 이미지 POP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문서를 따릅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연출 조명[스포츠 라이트]등은 건본주택 연출상 조명이며 본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분양을 위해 사용된 유인물의 치수는 인쇄 과정상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호실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및 카탈로그 또는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연출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인쇄물, 건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실 시공 시 건본주택 시공을 기준으로 실 시공됨을 상호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망, 주변 시설물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대지 경계선 외의 시설물은 이미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커튼, 침대, 가전, 악세사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건립 시 천장에 시공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건본주택 건축물 용도이며, 본 공사 시 관련법규 및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현장여건에 맞춰 시공됩니다.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마감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천장, 주방가구, 일반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기통신 분전반, 일괄소등스위치, 월패드, 디지털도어록 등의 제품사양 및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된 부분은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자는 이와 무관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사업지 인근의 각종 개발계획은 추후 인·허가 및 정부시책,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자는 이와 무관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거리는 네이버 지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향후 변경된 부분은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자는 이와 무관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CG 이미지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 CG)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인쇄 과정상 오탈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픽토그램, 아이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개발 예정 사항은 각종 언론 기사 및 지구단위개발계획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자는 이와 무관하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현한 지도상의 도로(예정) 및 거리, 지하철역(예정), 건물의 위치 등은 개략적인 내용이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호실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호실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기통신 분전반, 일괄소등스위치, 월패드, 디지털 도어록 등의 제품사양 및 수량,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각 타입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펜던트는 전시용으로 실 시공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수납가구와 주방가구, 욕실가구 및 샤워부스, 마루, 목창호는 본 공사 시 시공사별 입찰 결과에 따라 제조사, 브랜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폭과 색상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수전(싱크수전,세면대수전,욕조수전,샤워수전,세탁수전), 도기(세면대,양변기), 약세사리(수건걸이,휴지걸이), 환기디퓨저, 환기유니트, 바닥배수구 위치는 본 공사 시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	• 본 사업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주변 대지, 도로 등 이 분양광고일 기준으로 조성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단지 주변과 접하여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출입구 등에 경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휨스 또는 조정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내 옹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 주변 인접한 대지는 개별 사유지로 당 사업과 무관하므로 현장여건 및 주변 환경에 대해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길 바라며 추후 사업부지 외부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 일부는 인허가 사항에 따라 개방된 보행로와 차로로 계획되어 외부차량통행의 통로와 공공의 보행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임의로 통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 일부 도로의 관리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공공하수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지를 포함 주변은 상업지역으로 출.퇴근 등 차량 이용시 교통이 혼잡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인근 경인고속도로가 있으며 상부 방음터널이 설치 되어 있어 일조침해, 시야차단, 소음, 분진,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학교	• 과천갈현초등학교로 배정될 계획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중학생 배정은 과천울목중학교에 배치 예정이며, 배치 및 배정방법 등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과천시학교군 학군 배정방법 등 과천시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방법을 따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생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경기도 과천시)내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사용 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 승인일부터 1년간을 말함)
-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오피스텔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제한(매매, 증여, 부부 공동명의,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법규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오피스텔분양보증(사용검사 전)을 득한 건축물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분양신고확인증 교부일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승인 포함)까지	₩456,357,690,600원	01282025-105-00003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보증사고·보증기간,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오피스텔 및 복리시설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오피스텔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해당 사업장의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오피스텔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용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분양광고에 따른 분양계약자 모집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오피스텔 또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 ①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②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③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 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오피스텔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오피스텔건축사업의 분양신고확인증 발급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분양광고를 한 일간지(광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합니다)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접수일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본 공급시설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시행위탁자” 리즈인터내셔널(주)과 “시행수탁자” (주)한국토지신탁이 2025년 11월14일자로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1) 계약자(수분양자)는 다음 각 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분명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숙지, 확인, 인지하여야만 한다.
- (2)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시행위탁자 리즈인터내셔널(주)과 시행수탁자 (주)한국토지신탁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주)한국토지신탁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주)한국토지신탁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시행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시행위탁자 리즈인터내셔널(주)임을 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 (3) 시행수탁자 (주)한국토지신탁은 신탁계약에 의거 매도인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현존하는 신탁재산(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며, 본 공급계약에 의한 분양대금의 반환의무, 시공사 책임의 공사 지연을 제외한사유로 발생하는 입주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등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리즈인터내셔널(주)이 부담하고, 시공사 책임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주지연 지체 상금, 건축물의 하자보수 의무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위탁자 리즈인터내셔널(주) 또는 시공사 효성중공업(주)이 책임 처리하기로 하며, 시행수탁자 (주)한국토지신탁은 분양계약과 관련한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
- (4) 매수인은 본 분양목적물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해지(일부해지 및 일부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 포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행위탁자와 시행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며,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5) 매수인(수분양자)은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시행수탁자 (주)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과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위탁자 리즈인터내셔널(주) 또는 시공사 효성중공업(주)에게 있으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 교체시 매수인(수분양자)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6) (주)한국토지신탁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은 반드시 (주)한국토지신탁 명의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 (7) 분양대금은 본 사업의 토지비, 공사비, PF대출 원리금의 상환 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한다.
- (8) 수분양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중도금 대출 제한 비율 강화 및 담보대출의 제한 등), 집단대출 미승인, 대출금융기관 미확보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 담보대출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한 또는 대출불가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9) 시행위탁자 리즈인터내셔널(주) 또는 매수인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 (10) (주)한국토지신탁의 사전 승인 없이, 시행위탁자 리즈인터내셔널(주)과 매수인 간에 또는 시공사 효성중공업(주)과 매수인 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주)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 (11)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수탁자는 일절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위탁자 리즈인터내셔널(주) 또는 “시공사 효성중공업(주)에게, 분양대금 반환책임은 시행위탁자 리즈인터내셔널(주)에게 있다.
- (12)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감리회사	감리금액(원)	비고
건축, 기계, 토목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	950,000,000	부가세 별도
전기, 통신, 소방	동양종합엔지니어링(주)	1,140,000,000	
구조	(주)아이스트	24,000,000	

※ 상기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 될 수 있음. (감리금액은 '과천시식정보타운 상업 5블록 신축공사' 전체에 대한 감리금액임)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상호	주소	법인등록번호
시행위탁자	리츠인터내셔널(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 1807호(역삼동, 삼성제일빌딩)	120111-0650136
사업주체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주)한국토지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110111-1258220
시공사	효성중공업(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19(공덕동)	110111-6770154
분양대행사	(주)상림디엠텍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706호 (삼평동, H스퀘어 S동)	135811-0097650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주)한국토지신탁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80010
- 사업방식 : 관리형 토지신탁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 용도 · 규모
 - ①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일반상업 5BL
 - ② 지목 : 대
 - ③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 ④ 규모 : 지하 5층~지상 29층(오피스텔 : 지상 2층~지상 29층, 근린생활시설 : 지하 2층 ~ 지상 2층), 2개동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소유권에 관한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완납 시 개별 등기

■ **건본주택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번지

■ **홈페이지** : <http://www.해링턴스퀘어과천.com>

■ **분양안내** : 02-1551-0359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상 오류 외 분양광고 자체가 관계법령과 상이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우선입니다.

※ 본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건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